



윤석열, 개정 노조법·방송법 거부

12월 1일 임시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서명 ... “금속노동자가 끌어내린다”

윤석열이 끝내 개정 노조법 2·3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총력 퇴진투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월 1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방송 3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안건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조법 2·3조,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은 16시 30분 쯤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 재의요구안에 서명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노총은 국무회의 직후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시대착오, 독재, 반민주 행태이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권을 훼손하려 해도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현장에서 관철하도록 싸울 것이다” 라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금속노조도 즉각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 정신을

따르지 않는 정권은 필요 없다.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동자가 나서서 끌어내리겠다” 라고 결의를 다졌다.

같은 시각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 방송 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 을 열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인 12월 2일을 앞두고,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소식을 흘렸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ILO, 국제노총 모두가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의 70%가 노동삼권 보장을 지지한다” 라며 “유독 윤석열만 노동삼권을 부정한다” 라고 분노했다.

윤택근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과 언론법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라면서 “대통령이 노조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손잡고 힘을 낸다면 퇴진도 못 해낼 것이 없다” 라고 윤석열에게 경고했다.

노조법 즉각 공포를 걸고 19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는 “노조법 개정은 20년 동안 노동자들이 차별과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해온 역사의 산물이다” 라며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남재영 목사는 “시민의 70~84%가 노조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에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명령한다.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노조법 2·3조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린다는 법이다.

국회는 두 법을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17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받은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2월 2일이었다.

한국타이어 현장 노조파괴 노리나?

금속노조 사내하청 조합원 제외 임금인상 ... “이 정도 탄압으로 민주노조 못 깬다”

조현범 회장이 뇌물수수,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타이어에서 금속노조를 차별하고 노조파괴를 의심할 만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12월 4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 임금인상 소급분 차등 지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업체들은 지회와 교섭을 지지부진 끌던 중 법률상 임금·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고, 실체가 모호한 노사협의회 의결을 핑계로 금속노조 조합원만 제외한 임금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사측은 교섭 중 악랄한 통보를 했다. 지회 조합원들에게 임금인상 적용을 하지 않기 위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 지회는 사측이 조합원으로 추정하는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고용 승계 거부 협박을 하는 상황이라 명단 공개를 할 수 없었다.

사측은 지회 간부, 교섭위원과 공개 조합원들만 임금인상을 제

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원청 한국타이어의 사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회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로 차별하는 행위는 노조법 81조가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 활동 지배 개입이다”라고 사측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지회는 “우리 지회는 민주노조를 통해 고용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온갖 탄압을 견디며 단결을 지켜왔다”라며 “이 정도 탄압과 꼼수로 민주노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라고 일갈했다.

지회는 더 큰 단결과 투쟁으로 민주노조와 노조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결의했다.

지회는 지난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사고 이후 고용불안, 부당 대우 등에 대처하기 위해 4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조직화 과정을 거쳐 9월 업체들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거부, 조합원 명단 요구 등 비상식적인 이유로 교섭을 방해했다.

지회는 업체들이 불이익 협박, 업체 변경 시 해고, 조합 탈퇴서 배포 등 조합 운영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자 대전노동청에 고소했다.